

협력회사 행동규범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【 목적 】

이 협력회사 행동규범 (이하 “규범”이라한다)은 대흥아이비엔 주식회사(이하 “대흥아이비엔”이라 한다)의 모든 협력회사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【 적용대상 】

이 규범은 대흥아이비엔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,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 존중

제 3 조【 자발적 근로 】

협력회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,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 4 조【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】

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않는다. 또한, 여성,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.

제 5 조【 근로시간 】

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,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한다.

제 6조【 임금 및 복리후생 】

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최저임금, 시간외 수당, 복리 후생 등의 대가 지급에 있어 임금 관련 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. 또한,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고, 근로자에게 임금산정의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한다.

제 7조【 개인정보 보호와 인도적 처우】

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.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, 체벌과 욕설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.

제 8조【 차별 금지】

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고용 및 승진, 보상, 연수기회 등에서 국적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
제 9조【 결사의 자유 보장】

협력회사는 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, 근로자가 차별, 보복,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과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을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제 3 장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

제 10조【 산업안전】

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공정설계, 통제, 개인보호구 제공 등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.

제 11조【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】

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. 또한 반복 작업,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제 12 조【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】

협력회사는 작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, 소음, 분진 등이 발생된다면 작업 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며, 근로자가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
제 13조【 산업위생과 보건】

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,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

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14 조【안전보건 교육】

협력회사는 안전보건법규에 규정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근로자가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가시성이 높은 곳에 비치하고 공지되어야 한다.

제 4 장 환경

제 15 조【환경 법규의 준수】

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, 동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, 유지, 관리한다.

제 16 조【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】

협력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, 원료의 대체,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과 폐기물/대기오염 물질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 17 조【환경오염 방지】

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피하고,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 18 조【화학물질 관리】

협력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고, 유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제 5 장 기업윤리

제 19 조【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】

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,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한다.

제 20 조【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】

협력회사는 대홍아이비엔의 윤리규정에 따라 금품, 향응접대, 선물 등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,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한다.

제 21 조【 개인정보보호】

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, 보관, 처리, 전송,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/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한다.

제 22 조【 협력업체와의 상생】

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,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
제 23 조【 지역사회 공헌】

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,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,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제 6 장 부 칙

이 규범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